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15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아동가족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2. 15.)

## 2. 제안이유

-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모	정원(안)	운영방식	세대수
달서SK VIEW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	본리동 433번지	361.1158m <sup>2</sup> (지상1)	50 (예정)	민간위탁	1,196
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	상인동 1332-100번지	318.19m <sup>2</sup> (지상1)	50 (예정)	민간위탁	990

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내용
  - 어린이집 운영(아동 입소·상담 등 보육, 인사·회계 등)
  -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
- 위탁기간 : 5년(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)
- 수탁자 선정방식: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

## 4. 관련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」 제15조(위탁운영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서 제7조까지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동의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민간위탁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,
- 본리동 433번지 달서SK VIEW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상인동 1332-100번지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이 제출되었고, 달서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

-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충분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등을 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